

# 쿠무다 콘서트홀 대관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조건은 '쿠무다 콘서트홀'(이하 "쿠무다"라 한다)의 대관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대관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쿠무다"라 함은 대관 목적물에 해당하는 '쿠무다 콘서트홀'을 말한다.
- '대관자'라 함은 아래의 대관조건에 동의하고, '쿠무다 콘서트홀'의 대관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## 제 2 장 준수사항

### 제3조(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)

'대관자'는 대관시설물 일체를 사용 및 유지·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### 제4조(준수사항)

- "대관자"는 건물 내에 전시 관련 현수막, 홍보 안내물을 게시하려는 경우 "쿠무다"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"대관자"는 각종 안내 홍보물에 공연장소를 '쿠무다 콘서트홀'로 명기하여야 한다.
- "대관자"는 공연 홍보·진행에 있어 저작권, 초상권 등 제3자의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만약 이를 위반하여 "쿠무다"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"대관자"는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.
- "대관자"는 준비, 사용, 철수기간 중의 환경정리를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, 별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"대관자"가 부담한다.

### 제5조(책임과 의무)

- ① “대관자”는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,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변경 및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“쿠무다”에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“대관자”는 작품, 현수막, 홍보 안내물 등의 설치물, 이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“쿠무다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“쿠무다”는 승인받지 않은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, 설치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- ③ “대관자”는 대관 사용 종료 후, 또는 “쿠무다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시설 및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“대관자”가 승인 받지 않고 반입한 설치물과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“쿠무다”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,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“대관자”가 부담한다. 또한 이때 발생한 “대관자”의 설치물과 설비 일체의 손상에 대하여 “쿠무다”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### 제6조(행위제한)

- ① “대관자”는 “쿠무다”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1. “쿠무다”로부터 승인받은 대관사항(공연내용 및 일정)의 변경 행위
  2. “쿠무다”가 승인한 대관이용 권리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
- ② “대관자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1.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공연 및 행사
  2. 공연 및 행사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배치되거나 수용되기 부적절한 행위
  3. 인화물질의 반입 및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등 안전관리상 부적합한 행위
  4. 건물 내 위험, 소란 등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

### 제7조(시설의 명도)

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대관이 취소된 경우 “쿠무다”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“대관자”가 부가한 시설물 등은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승인취소

### 제8조(대관승인 취소)

"쿠무다"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-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지 않을 때
  - 대관료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⇒ 대관계약시 계약금 30% / 공연 1주일 전까지 잔금 100% 완납
- "쿠무다"가 승인한 수량 이상의 초대권 및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
  - 공연장 대관 시설의 관리·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
  - 자연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- 승인된 내용에 없는 종교 행사 또는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
  - 기타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### 제9조(취소요청)

- ① "대관자"의 요청으로 인한 대관 취소 시에는 "대관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"쿠무다"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.
-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- "쿠무다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- "쿠무다"의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
  -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- "쿠무다"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"쿠무다"가 인정할 경우

## 제 4 장 보 칙

### 제10조(손해배상 등)

- ① "대관자"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"쿠무다"에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- ② "쿠무다"는 대관기간 중(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) "쿠무다"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설치물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해 "쿠무다"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.

### 제11조(배상책임 등)

- ① "쿠무다"가 "대관자"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대관계약을 취소, 변경, 제한, 정지시켰을 때에는 "쿠무다"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"대관자"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② "대관자"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"대관자"는 공연 홍보·진행에 있어 저작권, 초상권 등 제3자의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만약, 이를 위반하여 "쿠무다"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"대관자"는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.
- ④ "대관자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이용객의 신체·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제12조(적용규정)

이 규정은 "쿠무다"와 "대관자"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,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쿠무다"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13조(위임규정)

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"쿠무다"에서 따로 정한다.